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안 제2조의2 신설)

- 1)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6호가목 (1)과 (2)를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주거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360, 3361, FAX 044)201-5531,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강탄산업(김우기)

나. 전화번호 : 031-796-7287

2. 명칭 : 벽체와 기초저판을 프리스트레스 공법으로 일체화한 프리캐스트 옹벽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

<기술의 요지>

기존의 프리캐스트 옹벽이 운반, 취급상의 문제로 벽체와 기초저판을 판상형으로 별도 제작하여 강관이나 콘크리트 부벽으로 각각의 판을 연결함으로써, 구조적 취약부가 발생하고 부벽으로 인해 뒷채움 다짐이 매우 불리하다. 신청기술은 공장에서 벽체와 뒷굽 기초를 일체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프리스트레싱 강봉(Prestressing Steel Threadbar)으로 긴장력을 도입하여 앞굽 기초를 강결하므로써 비교적 규모가 큰 역T형 철근콘크리트 옹벽(높이1.5~7.0m)을 강결체로 완성하면서 차량 운반이 가능하게 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옹벽 공법이다

<범위>

높이 1.5m~7.0m 콘크리트 옹벽의 벽체와 기초 뒷굽을 공장에서 일체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기초 앞굽을 프리스트레스트력으로 강결 완성하는 PC옹벽 공법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와 프리스트레스트구조를 결합한 복합 구조체 옹벽.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81호

엑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엑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안랩	2019-63	'19.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2, 6층 (삼평동, 판교 미래에셋센터)
주식회사 카카오벤처스	2019-64	'19.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삼평동)
주식회사 르호봇 비즈니스인큐베이터	2019-65	'19.9.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11, 9층

●조달청공고제2019-159호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 MAS계약 해지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2제2항에 의거 계약 해지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조 달 청 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001750447-00(2017.08.03)
- 계약건명 :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 MAS계약